

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12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4. 29

다. 상정일자 : 2003. 4. 29

(제109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(제11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임영태

나. 개정사유

- 현행 급수구역내의 고급이 원활하고 흡수정 이하의 설계 및 대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키로 심의 의견함.

다. 주요내용

-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의 설계 및 시공대행 폐지
(안 제14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근성)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도 화순군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의 설계 및 시공대행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,
-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케 할 수 있다함은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사항으로 규제나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며, 화순군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한다면,
-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 수도시설설치 등법시행령 제15조의2 전수 설비의 설치 대상 등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된 범위를 정하여 주민 편익에 앞장서야 함에도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무의미한 조문 삭제 등으로 행정규제 완화 실적올리기 등을 위해 본 의회의 의견을 요하는 회의를 소집 케하는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의 결"

도 보 결

7. 첨 부 :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2항을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기 정 안
<p>제14조(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)① (생략)</p> <p>②흡수정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삭제)</p>